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6 June 2017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복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기획재정부,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발표

###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2018년부터 매년 교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6월 22일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개최된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한국-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하였지만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양자간 협정을 하게 됐다고 협정 체결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IRS Releases Pact for Exchanging Global Tax Reports with Norway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3 pg. 133\)](#)

**미국 국세청(IRS), 노르웨이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발표**

IRS는 국가별보고서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체결한 두 번째 당국간 협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5 월 11 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앞서 네덜란드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국 조세조약에 근거한 IRS 모델 협약을 준용하였습니다. IRS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까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총 3 건의 당국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이란 정부 간 협약이자 양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절차를 구체화하는 협정으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IRS 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입니다. 본 협정을 통해 미국 다국적 기업은 외국 조세관할권이 아닌 IRS 에 직접 2016 년 조세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S 는 세금신고 제출기한 연장 마감일 및 첨부될 국가별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올 하반기(10 월 16 일)까지 약 100 여건의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MCAA)'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국가간 조세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2016 년 6 월에 발표한 최종 IRS 규정 (TD 9773)에 따르면 연 매출액 8.5 억 달러(약 1 조 원)이상인 다국적기업 납세의무자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방지를 위한 OECD 권고에 따라 당해 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 매출액, 순익, 자본 및 누적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정보를 국가별보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Turkey: Transfer pricing provisions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rules](#)

**터키: 이전가격 규정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 기준 발표**

지난 5 월 30 일, 터키에서 BEPS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이전가격 규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말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개정안은 BEPS Action 13의 이행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2017년 1월에 발표한 '각료이사회 문건 초안(a draft Council of Minister decision)'의 규정을 따릅니다.

### 이전가격 규정 개정안

이전가격 규정 개정안 초안은 그룹,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보고대상 기업, 대리제출 기업 등 관련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 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한 터키 이전가격 규정 개정항 목들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기준을 10%로 조정
-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이익분할방법 사용의 인정
- APA 소급적용에 대한 조항 추가
- 벌금 경감조항 (예: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시 벌금 50% 감면) 추가
- 'Real persons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 또는 감독 기능을 하는 사람)'의 특수관계자 인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에 대한 전제 변경
- APA 유효기간의 연장(기존 3년에서 5년으로)
- APA 갱신 신청 마감일 변경(기존 APA 만료 9개월이내에서 6개월이내로 개정)
- APA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 추가(예: 비교가능 거래의 검토, 기능분석, 비교가능회사 검색과정, 계약조건, 거래 조정 및 기타 주요사항 등)
- APA 소급적용 관련 세부 내용 추가(예: APA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 분 세금신고 수정은 가능하나 과거 사업연도에 초과 지급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개정안 초안은 OECD BEPS Action 13의 내용을 반영한 문서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구비해야 할 이전가격보고서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bC report)입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순 매출액 및 자산이 2.5억 TRY(약 810억 원)이상인 다국적기업 납세의무자는 통합기업보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기업은 2017년 사업연도 대상 통합기업보고서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구비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의 요청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 국내 또는 국외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신고일까지 개별기업보고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경우 국내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별도 구비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연결 매출액 2.37 억 TRY (약 1 조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에는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현지법인 사업활동(세전이익/손실, 자산현황, 직전 사업연도 손실, 종업원 수, 유형자산(현금성자산 제외))과 세금납부 현황((미)지급법인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첫 국가별보고서는 2016 사업연도 분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터키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 납세의무자(최종모회사 또는 대리제출 기업)는 법령 발효 이후 3 개월 이내에 터키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3 월말까지 동 자료를 터키 세무당국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India: Evaluating advertising and marketing promotion expenses as international transaction](#)

#### **인도: 광고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의 국제거래 간주**

인도 델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외국계 기업 인도법인)가 광고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 AMP)와 관련하여 인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처분에 항소한 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 테스트(bright line test)”의 법적 근거(statutory backing)가 미약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재검토를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인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마케팅활동을 개별거래가 아닌 기능으로 간주하고 이전가격조정에 있어 비교가능회사들의 이익률에서 AMP 비용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타당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사건개요

사건의 납세자는 선글라스와 안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인도 자회사입니다. 인도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AMP 비용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을 위해 인도 과세당국은 아래의 절차들을 수행하였습니다.

- AMP 비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테스트(bright line test)"의 적용
- 비교가능회사들의 수익 마진에 대한 "AMP 강도 조정(AMP intensity adjustment)" 수행

하지만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고 광고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 항목은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결정 및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과 더불어 "AMP 강도 조정"이 모든 대상연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동 사안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보다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ofit Method, RPM)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델리 조세심판원은 인도 과세당국이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별도의 거래로 간주하고 "명확한 기준 테스트(bright line test)"를 적용해 벤치마킹 스터디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고 소니 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사례의 원칙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델리 조세심판원은 본 사건과 관련해 인도 과세당국의 "AMP 강도 조정" 적용과 함께 납세자가 재판매가격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OECD: Countries sign multilateral instrument, implementing BEPS in tax treaties

### **OECD: 다국적기업 BEPS 차단 박차, 70개국 '다자협약' 서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 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70 여개국이 6 월 7 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인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등 총 67개국, 68개 조세관할지역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명국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 다자간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의 개요

다자간협약을 통해 마련된 국제공조체계를 통해 모든 협약 체결국들은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ction 2(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
-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조약혜택 부여 방지)
- Action 7(고정사업장 지위 인위적 회피 방지)
- Action 14(분쟁해결장치의 효과 제고)

다자간협약은 다방면으로 협약 서명 국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간 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되며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종전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BEPS 규정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조세조약 악용 및 조세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기준이 적용되고 협약 서명국들은 BEPS 프로젝트에서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을 거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다국적기업 등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OECD는 67개 서명국의 약 2,300개의 조세조약 중 다자협약에 따라 개정되는 조약이 약 1,100 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OECD는 추가적인 다자간협약의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다자간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약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다자간협약 현황

한국 역시 지난 7일 다자간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다자간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 수준이며 해당 조약들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조

세분쟁해결절차 개선안 등 BEPS 협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필요 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Back to top](#)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